

# 건조물 문화재 수리에 있어서 전통기술의 적합성 연구

- 기술의 속성 비교를 통하여 -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traditional technique  
in the field of Architectural heritage conservation

- Through Comparing properties -

오 규 성\*

Oh, Kyusung

(공학박사)

## Abstract

Traditional building technique has been used as the main technology in the field of architectural heritage conservation in South Korea. It has remained this way with very little resistance until now. But the time has come to question the appropriateness of traditional technique as conservation technique. In this paper a study was done on the properties of the traditional technique and the architectural heritage conservation technique in order to define the appropriateness between the two techniques. As a result the traditional technique was found to be unfit for conservation technique.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time gap between the traditional technique and the time when the heritage was first built. Second, conservation work is about retaining the values of being a heritage while the traditional technique is about safeness and practicality. Third, the use of traditional technique comes with using the tools of its time which cannot ensure the safety of the heritage. The traditional technique must be looked upon as one of an option in the field of conservation. We must develop a better conservation technology by finding balance between the traditional technique and modern science. And further more an aggressive investment must be made in order to realize this objective.

주제어 : 문화재, 건축문화재, 문화재보존, 문화재수리기술, 보존원칙, 전통기술, 전통기법용품

Keywords : Heritage, Architectural heritage, Heritage conservation, Conservation technology, Conservation principles, Traditional technology, Traditional technique

## 1. 서론

### 1-1. 문화재 보존과 전통기술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보존에 관한 근대적 개념과 관점이 자리 잡기 전에, 일제강점과 6·25전쟁 등, 정치사회적 혼란이 연속되었던 탓에 문화재는 제대로 된 관심과 관리를 받지 못하였다. 1961년이 되어서야 문화재 관리국이 설립되고 이듬해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 보존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법령의 제정은 있었을지언정 법령을 아우르는 문화재 보존 철학이 정립되었는가에 대해서 본 연구자는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재 보존 활동은 일견 법을 통해서 규제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문화재 보존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화재는 공적인 대상물이기에 분명 행정 처리의 대상이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각 문화재가 처한 다양하고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가장 적합한 보존의 방식을 합의해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측면이 아닌, 문화재 보존 철학이라는 근원적 기준이 더 요구된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법령이 먼저 제정되고 그것이 문화재 수리의 기초로서 작용하여

\* Corresponding Author : kyusung.oh@gmail.com

## 8 논문

이후의 수리 방식까지 지배하는 상황이 되었다. 즉, 전통문화 유지, 전승을 강조하다보니 문화재 수리 기법에 있어서도 전통기술을 사용한 문화재 수리가 최우선시 되고 당연시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전통기술은 유지, 전승되어야 할 명분과 사유가 분명하고 소중한 유산임은 틀림 없지만, 문화재 수리 기술에 있어서 '전통기술의 사용만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 수리와 전승에 가장 유리한 것이며, 혹은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 기조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논지를 전개하기 전에 먼저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 중에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우리의 문화재 보존 행위나 정책과 비교하는 연구<sup>1)</sup>가 있었다. 이는 대부분 우리의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목적이 엿보인다. 한편 우리의 문화재 보존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원형'에 대한 정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 연구도 있었다.<sup>2)</sup>

또한 문화재 관련 제도사를 다루거나<sup>3)</sup> 보존철학 또는 보존론을 다룬 저술<sup>4)</sup>도 출간되었다. 보존론 관련 서적은 외국의 경우를 국내에 소개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각 나라에서 문화재를 다루는 방식과 구체

적인 상황이 다르고 심지어 같은 동아시아에 속한 나라의 경우일지라도 참고는 되지만 우리의 상황에 딱 맞는 것을 찾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여러 저술 중, 국내의 사정을 다룬 이수정의 『문화재 보존윤리』가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건조물 문화재 수리가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한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피력한 글<sup>5)</sup>도 존재한다. 이러한 비판들은 대부분 복원 방식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비전통적인 연장과 기술을 사용한 것에 대한 비판의 관점도 있다.<sup>6)</sup> 그런데 본 연구자는 이처럼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문화재를 수리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이 같은 본 연구자의 시각과 관련해 연관성이 높은 선행 연구가 있다. 문화재 수리와 전통기술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로서<sup>7)</sup>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전통기술의 적용 범위와 그 의미를 되돌아보기 위해 베니스 현장, 체사르 브란디 및 발터 벤야민의 보존 이론, 나라 문서, 이코모스 현장 등 다양한 국제적인 보존 현장 및 해외 철학을 토대로 숭례문 복구 사업에 대입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문화재 수리에 있어서 전통기술의 사용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고 이를 부정적으로 판단했다는 결론은 본 연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세계문화유산 현장과 해외의 철학을 바탕으로 두고 분석한 반면 본 논문은 기술적 특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전통기술을 문화재 수리에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제도화되어 있는데<sup>8)</sup>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시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전통기술과 현대적인 문화재 수리 기술의 속성을 비교함으로써 과연 문화재 수리 기술로서 전통기술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1) 관련 연구로는 신회권의 「한양도성 복원 현황과 개선 방향-진정성과 환경성 측면을 중심으로」(『서울학연구』 No.80,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20, 73-111쪽.), 이화중·김기룡의 「세계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고려한 서울 압사동 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압사초록길 검토」(『한국신석기연구』, No.39, 한국신석기학회, 2020, 107-132쪽.), 천득염·김준오의 「건축사적 측면에서 본 미륵사의 세계유산적 가치」(『마한, 백제문화』 Vol.19,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0, 33-68쪽.), 노종국의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세계유산등재, 그 시각과 결실 그리고 미래」(『충청학과 충청문화』 Vol.21 No.1,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5, 9-22쪽.) 등이 있다.

2) 이는 기획 논문으로 다뤘는데 이수정의 「한국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원형개념의 유입과 원형유지원칙의 성립, 그리고 발달과정」(『문화재』 49(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00-119쪽.), 강현의 「건축문화재의 원형 개념과 보존의 관계-한국 목조건축문화재 수리역사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문화재』 Vol.49 No.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20-145쪽.), 이재필의 「무형문화재 '원형규범'의 이행과 의미 고찰」(『문화재』 Vol.49 No.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46-165쪽.), 이원호의 「자연문화재에 있어 원형개념 적용의 문제점」(『문화재』 Vol.49 No.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66-177쪽.), 황권순의 「문화재 소관 법령에서 '원형유지' 원칙에 대한 법률적 검토」(『문화재』 Vol.49 No.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78-189쪽.) 등이 있다.

3) 제도사를 다룬 서적으로는 조순자의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사 연구』(서울, 민속원, 2018.)와 김종수의 『한국 문화재 제도의 탄생-형성과 변천, 성립의 생생한 역사』(서울, 민속원, 2020.) 등이 있다.

4) 관련 서적으로는 이수정의 『문화재 보존윤리』(서울, 그래픽코리아, 2017.), Jean-Pierre Babelon·André Chastel의 『문화재의 개념』(김예경 역, 서울, 아모르문디, 2016.), 노먼 타일러·테드 리기벨·일레인 타일러의 『문화유산의 보존』(강경환 역, 서울, 민속원, 2014.) 등이 있다.

5) 이희봉, 「문화재전문가에 의한 문화재 파괴, 이제 그만 막아야 한다」, 『건축』 Vol.57 No.9, 대한건축학회, 2013, 84-88쪽.

6) 이런 경우는 대부분 부실시공과 관련한 글이 작성된다.("[국감]순혜원 "대홍사 적목당, 전통기법 무시된 채 수리", 『머니투데이』, 2018.10.29. 기사)

7) 강현, 「건축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전통기술 논의 고찰-숭례문 복구에 있어서의 전통기술 적용 논란을 중심으로」, 『문화재』 Vol.47 No.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208-223쪽.

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제3항 제2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3(문화재수리의 설계심사 세부기준) 제1항 제5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설계승인) 제2항 제2호 등을 보면 문화재수리 시 전통기술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대적인 문화재 수리 기술과 전통기술의 속성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문화재 수리 시 전통기술을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전통기술’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옛 부재에 남은 가공의 흔적도 ‘전통기술’로 볼 수 있고, 전통기술을 익힌 기술자들이 행하는 행위도 ‘전통기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술자들이 행하는 무형의 ‘전통기술’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전통기술에 의한 전통건물의 수리는 노후화된 부재는 교체 또는 부분 교체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된 부재나 부위는 제거하고 또 반대로 새로운 용도가 필요할 경우 부재나 부위를 추가하여 건물을 개조한다. 그러나 문화재를 수리할 때는 다른 관점에서 판단하고 수리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전통기술이 여전히 문화재 수리에 유효한 기술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전통기술을 사용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전통기술과 문화재의 정의와 속성을 비교하여 과연 전통기술로 문화재를 다루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를 논해보고자 한다.

2. 국내의 문화재 수리 환경

2-1. 문화재 개념과 관련 법령 제정의 초기 현황

‘문화재(文化財)’라는 개념은 서양에서 처음 발생하였다.<sup>9)</sup> ‘문화재’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인류 문화 활동의 결과물 중 가치가 높은 것”이라는 의미와, “법에서 정한 정의를 따른다”는 의미 등 2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sup>10)</sup>

서양의 문화재와 연관 지어 생각할 만한 단어가 한반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 초기에 편찬한 『고려사』에는 ‘유적(遺跡)’<sup>11)</sup>이라는 표현이, 『조선왕조실록』에도 사용된 한자는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유적(遺迹)’<sup>12)</sup>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그리고 1530년에 간행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적(古蹟)’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sup>13)</sup> 이런 용어들은 사회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터’를 뜻하며 서양에서 정의된 문화재의 정의와는 일부 교집합을 지닌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1927년이 처음이다.<sup>14)</sup>

‘문화재’라는 근대적 개념과 이전의 용어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공공성’과 ‘국가에 의해 보호된다는 관념’의 유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sup>15)</sup> 즉, 『조선왕조실록』이나 『고려사』에 등장하는 ‘유적(遺迹 또는 遺跡)’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고적(古蹟)’ 등의 용어가 근대적 개념의 ‘문화재’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sup>16)</sup>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련 법령에 있어서 초기에 영향을 주었던 요소를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일제강점기인 1916년, 일제는 그들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시행하기 위해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을 제정하였다. 우리의 주체적인 시각이 결여되었음에도 이 규칙은 이후의 우리나라 ‘문화재’ 관련 법령의 기초가 되었다.<sup>17)</sup>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의 주 대상은 고적과 유물이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고적의 경우 “패총, 석기·골각기류를 포유(包有)하는 토지 및 수혈 등의 선사유적, 고분과 도성, 궁전, 성책(城柵), 관문, 교통로, 역참, 봉수, 관부(官府), 사우(祠宇), 단묘(檀廟), 사찰, 도요(陶窯) 등의 유지(遺址) 및 전적(戰跡), 기타 사실(史實)에 관계있는 유적(遺跡)”을 의미한다고 했고, 유물의 경우 “연대를 거친 탑, 비, 종, 금석불, 당간, 석등 등으로서 역사, 공예, 기타 고고의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up>18)</sup> 이러한 개념 하에 일제는 여러 제도를 규정해나갔다. 1933년에 일제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을 수립하였다. 여기에서 보물은 “건조물·전적·서적·회화·조각·공예품·기타 물건

12)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5월 20일 辛酉, 2번째 기사.  
 13) 김종수, 『한국 문화재 제도의 탄생·형성과 변천, 성립의 생생한 역사』, 서울, 민속원, 2020, 19쪽.  
 14) ‘문화재’라는 용어는 1927년 7월 21일 ‘동아일보’의 사설에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김종수, 앞의 책, 20쪽.)  
 15) 김종수, 앞의 책, 16쪽.  
 16)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서 보이는 ‘유적(遺迹 또는 遺跡)’과 ‘고적(古蹟)’은 옛 자취나 흔적 또는 그와 관련된 장소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공공성’과 ‘국가에 의한 보호관념’을 기준으로 하는 근대적 개념의 ‘문화재’와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김종수, 앞의 책, 19쪽.)  
 17) 김종수, 앞의 책, 19쪽.  
 18) 김종수, 앞의 책, 320쪽.

9) 프랑스 미술학자인 앙드레 샤스텔(André Chastel, 1912·1990)과 역사학자인 장 피에르 바벨롱(Jean-Pierre Babelon, 1931·)은 종교적 측면에서 시작하여 군주제, 가족, 국가, 행정, 과학의 측면에서 문화재 개념의 진화 과정을 분석하였고 일반 대중이 문화유산을 접근할 수 있던 시기는 18세기로 보인다. (김예경 역, 앞의 책, 60·62쪽.)  
 10)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문화재’에 대한 정의는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정의는 문화 활동의 결과물 중에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유형·무형의 축적물이라는 일반적인 해석을 제공하고, 두 번째 정의는 법의 정의를 따른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대동소이하다.  
 11) 『고려사』, 『고려사』를 찬진하는 전.

으로서 특히 역사의 증경 또는 미술의 모범이 될 만한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고적·명승·천연기념물은 “폐총·고분·절터·성터·가마터·기타 유적·경승지 또는 동물·식물·지질·광물·기타 학술연구의 자료가 될 만한 것으로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up>19)</sup> 사실상, 이 법은 광복 후에 대한민국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한 1962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문화재 행정의 근간이 되었다.<sup>20)</sup>

「문화재보호법」을 살펴보면 문화재에 대한 정의의 대상별로 달리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설명한 일제의 방식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 중 건조물 문화재의 경우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 하였다.<sup>21)</sup> 이때 정립된 정의는 계속 유지되다가 1999년에 이르면 문화재를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 재정의 하였고, 건조물 문화재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정의하였다.<sup>22)</sup> 이를 보면 문구에서는 약간의 변화를 보이지만 기본 정의 자체에는 수십 년 간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 2-2. 법령에서 보이는 전통기술 사용 관련 문구

1961년 문화재관리국은 발족 이후 문화재청으로 승격되는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약 60여 년 동안 문화재 관련 행정의 주체가 되어 왔다.

여기에서 정립해나간 문화재 수리 관련 법령을 보면 건조물 수리 시에 전통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는 2019년에 처음 등장한다.<sup>23)</sup> 이어서 2020년에는 문화재 수리의 설계승인 심사 항목 중 ‘전통적 기술의 사용’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조항<sup>24)</sup>이 추가되었다. 이는 문

화재관리국이 발족한 이래 58년이 지난 최근의 일로서, 문화재 수리는 당연히 전통기술로 해야 하며 이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리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차이가 있다. 초기의 문화재 관련 법령에는 전통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없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본 연구자의 예상으로는 문화재 수리는 전통기술로 해야 함을 당연한 명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구태여 이를 법률로 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통기술의 사용에 대한 문구는 오히려 법이 아닌 행위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방에서 훨씬 더 일찍 나타난다. 1974년에 처음으로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가 문화재관리국 내부 자료로 발간되었다. 이때 만들어진 시방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sup>25)</sup> 1994년에 개정된 시방서의 총론을 살펴보면 ‘전통기법으로 수리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sup>26)</sup> 최초 발간 후 20년 후의 자료지만 이전의 시방서도 유사한 기초를 유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쨌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전통기술 기반의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의 존재는 문화재 수리 사업의 설계도 전통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후에 이루어진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나 『문화재 표준품셈』의 개정도 이러한 점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시 말해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실제 문화재 수리에 있어서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 전통기술 사용이 명문화됨으로써 사실은 문화재 수리는 당연히 전통기술로써 해야 한다는 생각이 실제 수리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고, 표준시방과 표준품셈을 모두 전통기술에 바탕을 두고 만들었기에 문화재 수리 사업 설계 시 사업비는 이를 바탕으로 산출되었다.

그렇다면 문화재는 오래된 건물이고 오래된 건물은 당연히 옛 기술로 수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애초부터 법에 근거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전통기술을 문화재 수리 기술로 채택한 것은 현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당연한 생각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법에 스며든 현상이며 문화재 수리에 대한 철학적 사고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통기술과 문화재 수리의 성격을 살펴보고서

19) 김종수, 앞의 책, 325쪽.

20) 김종수, 앞의 책, 22-23쪽.

21) 「문화재보호법」, 제2조(문화재의 정의) 참조, <시행 1962.1.10.> <법률 제961호, 1962.1.10., 제정>.

2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제1항 참조, <시행 1999.7.1.> <법률 제5719호, 1999.1.29., 일부개정>.

2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전통기술의 보존·육성·보급)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보급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리한 조항이다.<신설 2019.12.3.>.

24) 2020년 6월 9일 법률에 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을 위한 심사 항목 중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는 내용이 추가되고(「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제3항 제2호.) 이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으로 ‘전통 기법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보강 기법 및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유효성을 입증할 것’이라는 내용의 조항이 같은 해 12월 10일에 신설되었다.(「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심사 세부기준) 제2항 제5호.)

25) 문화재청에 1974년에 발간한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 대한 자료 협조를 요청했지만 발간자료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26)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1994, 12쪽.

로 간의 적합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3. 건조물 문화재 수리 기술의 속성

#### 3-1. 건조물 문화재의 가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건조물 문화재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지녀야 한다.<sup>27)</sup> 그러나 법에 명시된 이 가치들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최근 2021년 11월이 돼서야 마련되었다.<sup>28)</sup>

개정 내용을 보면 역사적 가치는 시대성, 역사적 인물 관련성, 역사적 사건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 등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예술적 가치는 보편성, 특수성, 독창성, 우수성 등을 보유해야 하며, 학술적 가치는 대표성, 지역성, 특이성, 명확성, 연구 기여도 등을 보유해야 한다.<sup>29)</sup> 상기에 나열한 특징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보유해야 문화재로 지정된다.

그렇다면 건조물 문화재는 지정 가치를 어떠한 형태(또는 방식)로 지니고 있을까? 건조물 문화재는 ‘건물(建物)’ 또는 ‘건축물(建築物)’에<sup>30)</sup> 해당한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건축의 결과물인 구조물은 인위적인 기술이나 조형의지를 담아 구현하는데 이때 도구가 되는 것이 ‘부재(部材)’이다. 건조물을 문화재로 지정할 때 건물의 역사적 배경도 살펴보지만, 건물의 건축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부재를 살펴보기 마련이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공간 구성 방식이나 부재 가공 형태를 통한 예술성을 평가하고, 부재의 가공 형태를 통해 과거의 건축기술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부재에 남은 흔적을 통해 원형과 변형 과정을 추정하고, 외부에 남은 가공 흔적을 토대로 사용 도구와 기술을 추정하고, 부재에 남아 있는 묵서명(墨書銘)을 통해 역사성을 확인하고, 부재 표면에

27)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제1항제1호 참고<시행 2021.11.19.>.

28) 기존에는 건조물 문화재를 분류별로 나열하고 단순히 역사적·예술적·학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었고 게다가 이전에는 언급이 없던 ‘기술적 가치’가 갑자기 등장해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는데, 2021년 11월 9일부터 국가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리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외2]의 내용을 상세하게 개정하였다.

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외2] 국가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개정 2021.11.9.> 참고.

30) 건축(建築) : (전략)...건축은 원래 인간적 요구와 건축재료에 의해 실용적·미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을 말하며, 단순한 건조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구조물은 ‘건물(建物)’이라고 한다. 따라서,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간에 작가의 조형의지가 담긴 구조물을 ‘건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남은 단정을 통해 문양의 원형 등을 찾아본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기의 조사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예를 들어 보겠다.

과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인해 많은 사찰이 소실되어 진후에 중건(重建)한 경우가 많다.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심각한 부재 수급난에 시달렸던 탓에 이 당시에 다시 지은 건물들은 이음부재나 합재(合材) 그리고 곡재(曲材)<sup>31)</sup>의 사용과 보강 기법이 유난히 많이 보인다. 이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건물에 고스란히 남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민가의 경우 건축 재료를 원거리에서 확보하기보다는 대체로 근처에서 확보하므로 다른 건축에 비해 지역색이 뚜렷이 남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하여 산간지역에서는 주로 나무를 주요 소재로 삼아 너와집이나 굴피집 또는 통나무집 등을 만들었고, 평야지역에서는 농사의 부산물인 짚을 활용하여 초가집을 지었으며, 논농사가 어려운 바닷가나 강가에서는 역새풀을 활용하여 셋집을 지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현재 건조물 문화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건물에 남기 마련인데 그것들은 결국 부재를 통해 확인된다. 그러므로 건립 배경이나 역사적 사건(또는 인물)과 관련한 인문학적 사건을 제외하면 건물을 문화재로 인정하는 가치는 결국 부재에 내재하므로 원부재의 보존은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2. 건조물 문화재 수리의 목적

그렇다면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수리 행위는 어떠한 목적을 지녀야 하며 그 과정은 어떠한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문화재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遺産)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문화재 보존 기본 원칙을 ‘원형보존’으로 정했다.<sup>32)</sup> 이는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을 온전히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세운 원칙이다.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중에는 동산(動産)이 있고 부동산(不動産)이 있는데 건조물은 부동산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물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장소성’이라

31) 곧은 부재를 뜻하는 ‘직재(直材)’에 대비되는 용어로 자연스럽게 휘 형태를 간직한 부재를 의미한다.

32)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참조. <시행 2021.11.19.>

는 속성을 보유하고 있어 동산 문화재와는 속성이 다  
소 다르며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야외에 자리하고  
있다.<sup>33)</sup> 야외에 놓인 건조물 문화재는 비, 눈, 바람, 해  
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발생한다. 또한 부재의 노후화에 의해 수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건물을 수리하  
는데 수리는 현상(現象)을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문화재 보존 원칙에 어긋난다. 그런데도 건물의  
유지를 위해서는 수리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최소한의  
수리<sup>34)</sup>’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sup>35)</sup>

결국 건조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수리는 건조물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인데 이로 인해 문화재  
의 지정 가치가 훼손되거나 상실되는 상황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나 무지로 인한 지정 가치의 훼손은 안 되며  
더 나아가 잠재적 가치의 훼손마저도 허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처럼 수리가 건조물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  
하거나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우리는 문화재 수리를 지금 이 순  
간 중단해야 한다. 우리가 건조물 문화재를 수리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수리 과정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면 건조물  
을 대상으로 하는 수리 과정은 어떠한가 하는지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건조물 문화재 수리 행위는 단순히 건물의 기능을  
복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건물이 간직한 역사적·예술적·  
학술적 정보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이자 과정이  
다. 이를 위해서 우선 수리의 주체는 수리 대상 문화재  
의 지정 가치를 온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수리 대상 건물의 문화재적 가치가 어디에 어떠한 방  
식으로 남아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  
고 수리 과정 중에 수행하는 조사를 기반으로 양식의  
조사, 기술의 추적, 과거 수리 흔적 확인, 변천 과정 추

33) 경천사지십층석탑(국보)이나 지광국사현묘탑(국보) 등의 경우 모두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때 약탈의 목적으로 옮겨  
진 사례에 해당하며 경천사지십층석탑의 경우 경천사가 북한에 있어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안치하였고, 지광국사현묘탑은 최근 원주의 법  
천사지로 뒤돌려 놓기로 결정했다(“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향 2024  
년 가닥” 『강원도민일보』, 2022.1.28. 기사).

34) 이는 얼핏 보면 수리범위 설정에 대한 지침으로 보이지만 이는  
범위뿐만 아니라 수리횟수도 포함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  
을 것 같다.

35) ‘최소한의 수리’는 원칙은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2022년)의  
‘0100 일반공통사항’ 중 ‘0110 문화재수리원칙’의 제0항에 명시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 제도도 건조물 유산에 대한 수리 원칙들이 많  
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수리 행위로 인해 문화유산의 가치가  
상실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노력이다.

정, 공간과 역사적 사건과의 연관성 확인, 부재 수급처  
및 방법 등을 통해 건물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찾아내  
야 한다. 이러한 의미들은 부재나 공간과 연관을 맺을  
수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공간이나 부재 보존의 당위  
성을 제공한다. 이런 방식의 수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  
고 혼자서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므로 관련자들을 최  
대한 많이 만나보고 수집한 정보들을 짜 맞추어 수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수리 대상의 문화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고  
이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서 해당 문화재의 가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당위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 발굴한 정보를 어떻게 정리해야 이를  
일반인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일반 건축공사와 문화재 수리의 결정적인  
차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의 문화재 수리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우선 수리 대상 건물의 가치 파악이  
쉽지 않다. 문화재를 지정할 당시에는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판단한 근거가 있었겠지만, 그 내용은 구체적이  
지 않다. 그리고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역사  
적·예술적·학술적 가치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다. 대체  
로 지정 배경을 서술형 문장으로 기록하여 건물의 어  
떤 부위(또는 부재)에 어떠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잘 안되므로 수리 과정  
과 그 후에도 무엇을 일반인들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  
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결국엔 건물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나 사건 등을 정리하여 안내판에 수록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덕수궁 석조전에 대한 수리 후 활용 프로  
그램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sup>36)</sup>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서 선택하기 쉬운 방법은 모든  
것을 보존하거나, 구조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수리의 우  
선순위를 정하거나, 전통기술의 사용 등을 권장하여 수  
리 과정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의 접근은 문화재 지정 가치 보존의 핵심  
을 벗어난 것들로 오히려 문화재의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가치 보존 목적의 수리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전환하  
면 전통기술 외에도 현대적인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36) 덕수궁 석조전은 복원 사업 후 제한 관람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내부 복원 공간에 대한 해설을 역사적 일화와 공간의 기능을 균형 있  
게 계획하여 해설사가 일반 관람객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는  
수리 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를 수리 후 어떻게 활용하여 일반인들에  
게 전달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문화재 수리는 현대적인 조사 기법을 통해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부재들을 통해 알아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학설과 가치를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부재들에 대한 보존 가치의 우선순위도 매겨진다. 그리고 보존의 우선순위가 높은 부재들을 다룰 때는 현대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전통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수리 후의 모습이 조화로워 보아야 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조물 문화재 수리는 이처럼 해당 건물의 가치 형성에 이바지하는 부재들을 파악한 다음, 이 부재들에 대한 보존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수리 시 당연히 교체되는 부재라 하더라도 문화재적 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보존해서 제자리에 다시 재설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재 수리의 특징은 수리 과정을 통해 기존의 지정 가치를 보존함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여 지정 가치를 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강화한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건조물 문화재 수리를 통한 가치 순환

#### 4. 전통기술의 속성

##### 4-1. 당대의 기술이었던 전통기술

일반적으로 ‘전통기술’은 아주 먼 과거의 기술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진의를 파악해 보자. ‘전통기술’이라는 단어는 ‘전통(傳統)’과 ‘기술(技術)’의 합성어이다. ‘전통’의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바람직한 사상이나 관습, 행동 따위가 계통을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진 것”<sup>37)</sup>이라 하고 있다. 여기에 ‘기술’을 덧붙인 것이다. 즉, ‘전통기술’은 ‘과거’와 ‘현재까지 전해진 것(연속성)’이라는 의미를 동시

37) 네이버의 『고려대한국어대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공하는 ‘전통’에 대한 정의는 대동소이하다. 또한 영어사전에는 ‘Tradition(전통)’에 대한 정의를 대체로 “과거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하지만 『Cambridge Dictionary』에서는 “particular society or group(특정한 사회나 집단)”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또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전통’에 대한 정의와 거의 유사하다.

에 지닌 기술이라는 것이다. ‘전통기술’은 과거의 기술이지만 그 맥이 이어져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시간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전통기술’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과거의 기술’은 이전 어느 시기에 속하는 당대의 기술이다. 즉, 지금은 ‘전통기술’이라고 부르는 기술이 과거에는 상시로 사용하던 실용적 기술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실용적인 기술이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대부분 갖췄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실용적인 ‘건축기술’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건축기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인간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성과 실용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건물이나 시설물과 같은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sup>38)</sup>이라고 되어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건축기술’은 ‘필요한 공간’에 대한 ‘예술성’, ‘실용성’, ‘안정성’ 등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통기술’도 과거에는 이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한 기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키워드를 토대로 ‘전통기술’의 특성을 파악해 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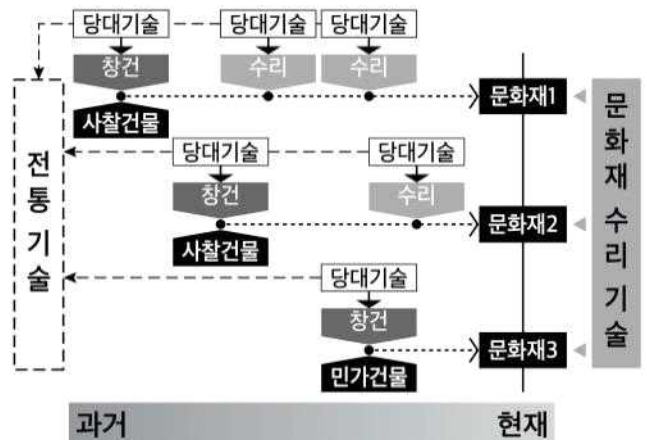


그림 2. 시대별로 축적된 전통기술과 문화재 수리 기술

##### 4-2. ‘실용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전통기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기술’은 예술성, 실용성, 안정성 등을 요구한다. 이 중 ‘예술성’은 양식 또는 건물의 인상과 연관된 조건이고, ‘실용성’은 기술사용의 용이함과 연관된 것이며, 마지막으로 ‘안정성’은 구조와 연관된 것이다.

우리는 이 중에 ‘실용성’과 ‘안정성’이라는 요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축기술의 ‘실용성’은 “실제로 사용하는 기술”을 의미하므로 “살아있는 기술”로 생각할 수

38) “건축 기술(Architecture Technology, 建築 技術)”, 『두산백과』(doopedia.co.kr).

## 14 논문

있다. 즉, 과거의 기술이 아니라 현재 실생활에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이는 연장과의 연관성도 감안해야 하는데 연장과 관련한 문제는 다음 절에서 논하기로 한다.

‘안정성’이라는 요건은 구조와 관련하여 “안전한 공간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지닌다. 그러므로 공간 구성을 목적으로 부재를 사용할 때에는 부재의 성능을 충분히 감안하여 안정성을 확보한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건물을 수리할 때에도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부재는 강한 부재로 교체한다. 그래야 공간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기둥 교체 사례 (좌:수리前/우:수리後)



그림 4. 기둥 동바리 수리 사례 (좌:수리前/우:수리後)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전통기술’을 문화재 수리에 사용할 경우 내구성이 다한 구부재(舊部材)를 신부재(新部材)로 교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약화된 부재의 경우 문제가 되는 부위를 중심으로 제거하고 제거된 부위는 신재로 교체한다. 이때 신재와 구재의 연결은 ‘전통기술’에 따라 시공한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문제가 되는 부재나 부위는 건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재로 교체한다.<sup>39)</sup> 이는 우리가

39) 전통기술로 건물을 수리할 경우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부재는 구재와 신재를 이어서 구재를 부분적으로 다시 재사용한다. 이와 같은 기법을 기둥에 적용할 경우 이를 ‘동바리’라 부른다. 문화재 수리의 경우 기둥뿐만 다른 부재에도 이와 같은 수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기술에 의거하여 구재와 신재를 이을 때에는 신재도 일정한 길이나 높이를 확보해야 한다. 즉, 전통기술에 의거한 수리 기법을 사용할 경우 부식된 부위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멀쩡한 부

‘전통기술’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건물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는 ‘전통기술’의 속성에서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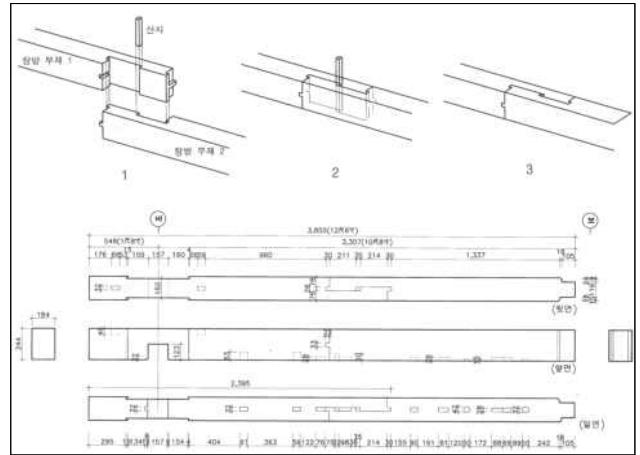


그림 5. 전통기술에 의한 창방 수리(구재+신재) 사례  
(출처 : 문화재청, 『귀신사 대적광전 수리·실측조사보고서』, 2005년, 142·149쪽)

이처럼 실용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전통기술’을 문화재 수리에 사용할 경우 2가지 문제점이 확인된다. 하나는 ‘전통기술’이 속한 시대와 수리 대상 문화재가 속한 시대의 불일치 문제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흔적을 간직한 부재에 대한 교체 판단 기준이 바로 그것이다. 왜냐면 이는 문화재의 가치와는 무관한 결정이고 실용성과 안정성의 측면에서 부재의 노후화나 부재의 기능 구현 여부에 따라 교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부재가 오래되어 구조적 내구성이 다한 부재라면 이는 구조의 안정성 측면에서 교체의 이유가 되며, 부재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면 실용적인 측면에서 제거 가능한 부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재의 가치기준으로 보면 이는 달라질 수 있다. 아무리 구조적 내구성이 다한 부재이거나 기능을 상실한 부재라 하더라도 해당 문화재의 가치 기여도 높은 부재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를 재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4-3. 전통기술과 연장의 사용 문제

‘전통기술’의 사용은 연장의 재현을 동반한다.<sup>40)</sup> 이는

위도 일정 정도 제거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재가 희생해야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40) 윤희로는 인력 연장을 현대기계장비로 대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전통의 맥이 끊어졌다고 할 정도로 전통건축에서의 장인과 연장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였다. (『전통건축의 설계 수리 보강에 대한 소고/03. 특별강연』,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2010, 40쪽.)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기술과 연장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성을 맺고 있고 또 어떤 연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술의 수준과 방식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건축기술의 실용성과도 연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기술’을 문화재 수리에 사용하면 해당 기술 전개에 필요한 연장도 같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사용하는 전통연장의 안정성은 지금 기준에는 못 미친다. 이는 아무래도 채래식 원리에 의해 구동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전통기술’을 사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뒤따르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전통연장을 문화재 수리에 꼭 사용해야 하는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시연하는 기능자들의 안전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수리 대상인 문화재를 안전하게 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 있다.



그림 6. 이마대(이각대)를 이용한 석탑 수리

석탑 수리 공사 현장에서는 ‘이마대(또는 이각대)’를 사용한다. ‘이마대’는 2개의 긴 나무를 ‘스’자 형태로 세워놓고 이를 지지대 삼아 줄로 무거운 돌을 묶어 원하는 위치로 들어 옮기는 용도로 사용한다. 이마대는 ‘회롱통(回籠桶)<sup>41)</sup>’과 같이 사용하는데 이는 무거운 부재를 밧줄을 감거나 풀면서 부재를 들어 올리고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연장이다. 그리고 또 전통기술에 의하면 무거운 부재는 ‘목도’라는 방식으로 운반하는데, 이때 ‘목도채’와 ‘목도줄’을 사용한다. 목도에 동원되는 인원이 2명일 경우에는 2목도, 4명일 경우에는 4목도, 8명일 경우에는 8목도라 한다.

이러한 연장들은 공통적으로 무거운 부재를 양중하여 원하는 위치로 옮길 때 사용하였다. 과거에는 매우 유용

하게 사용한 연장들이었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불안한 연장들이다. 1966년에 불국사 석가탑을 해체수리 할 때 이마대를 사용하다가 지주가 부러져 양중하던 2층 옥개석이 낙하하여 바닥에 있던 3층 옥개석과 탑신석 일부가 파손되었던 일화는 유명하다.<sup>42)</sup>



그림 7. 회롱통



그림 8. 2목도와 4목도 (출처 : 김중남)

이처럼 전통연장은 과거의 기술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나 안전성 측면에서 약점을 보인다. 과거의 채래식 연장은 전통기술을 구현하는 데에는 꼭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는 불상사는 방지해야 한다.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장비가 있다면 문화재는 물론 작업자를 위해서라도 현대 장비나 연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4-4. 시간과 전통기술의 관계

다음으로 ‘전통기술’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을 살펴보자. 전통의 ‘연속성’은 시간과 관련된 속성으로 ‘지속성’, ‘변화’, ‘현재와의 관련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sup>43)</sup>

42)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수리 보고서 I』, 2017, 28쪽.

43) 권영길은 전통이 지녀야 할 세부적인 성격으로 첫째, 일정 시간 이상의 ‘지속성’, 둘째, ‘변화’, 셋째, 민족 또는 지역의 ‘고유성’, 넷째, ‘현재와의 관련성’을 들었다(권영길, 『한·중·일의 공간조영』, 서울, 도서출판 국제, 2008, 23·24쪽.). 이 중 ‘지속성’, ‘변화’, ‘현재와의

41) ‘회롱통’로 많이 알려진 연장이지만 고종연간에 경복궁 중건 과정을 기록한 『영건일감(營建日監)』에는 ‘회롱통(回籠桶)’으로 기록되어 있다. (『營建日監』, 을축 6월/병인 정월.)

이 중 '지속성'은 과거에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다가 소멸된 것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과거에 명맥이 끊긴 기술도 포함한다.

'시간'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보다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기술은 모두 '과거 기술'이 되므로 현재의 기술도 내일이 되면 '과거 기술'에 편입된다. 다만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의 기술'이 '오늘의 기술'과 동일하다면 '현재의 기술'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스펙트럼을 늘려 보면 기술은 조금씩 바뀌며 진화해 나간다. 이 과정을 '변화'로 인식한다.

건축물 분야의 기술은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다. 그중에는 소멸된 기술도 있고 지금까지 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그중에 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은 기술을 '전통기술'이라 부른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변화'와 '소멸'의 과정을 거치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 '전통기술'인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닌 지식의 한계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즉,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기술'은 과거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건축물 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전통기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은 대체로 조선 말기에 사용하던 것들이다. 실제로 조선 후기의 기록들을 속에 나오는 부재명이나 연장 또는 조직의 명칭 등은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하다. 그러나 조선 초기나 고려 후기 상황도 그럴까? 조선왕조는 대략 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존속했던 국가이다. 조선만 놓고 봐도 초기와 후기의 사회상이 서로 같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하물며 기술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조선 초기의 건축 기술이나 연장의 실상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을 '전통기술'로 포장하여 문화재가 속한 시대를 가리지 않고 수리하고 있다. 고려시대나 통일신라시대 혹은 그 이상의 시대에 해당하는 대상물을 두고도 똑같이 대하고 있다. 이는 '전통기술'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1,000년 이상의 기술발전 과정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단 '전통기술'이라는 미명하에 문화재 건립 당시에 사용한 기술들을 모두 아는 것처럼 대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솔직하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고 전문가라는 허울 아

관련성' 등은 '연속성'과 연관이 있는 특성으로 파악된다.

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할 경우 모르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기술'의 적용 범위를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 5. 전통기술과 현대기술의 접목

### 5-1. 문화재 수리 시 전통기술의 한계

현장에서는 문화재 수리는 전통기술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문화재에 발생하는 피해 양상을 보면 전통기법을 사용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때로는 과거에는 없던 피해가 현대 시기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흰개미 피해<sup>44)</sup>가 대표적이다. 현재 우리가 전통기술로 문화재 수리를 할 때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사람이 가공하게 되면 실행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 문화재를 수리할 때에는 이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긴다. 일단 가공의 정교함의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수행 가능한 정도의 정밀함 이상을 요구하기가 어렵다. 이는 신재와 구재를 접합해야 할 때 발생한다. 아무리 정교하게 작업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작업의 용이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 발생 부위 이상을 제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기둥의 하부가 부식된 경우 사용하는 전통적인 수리 기법은 동바리이음이다. 동바리이음은 기존 기둥의 하부를 제거하고 신재로 하부를 만들어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리한다. 그러나 이때 사용하는 신재의 경우 구조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최소 300m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한다<sup>45)</sup>.([그림 4] 참조) 기둥의 하부 부식 부위가 이에 못 미칠 경우 동바리의 구조적 성능 확보를 위해 멀쩡한 부위도 제거하게 된다.<sup>46)</sup> 이는 신재를 위해 구재가 양보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방식으로 수리를 하는 것일까? 우선 기둥 하부에 발생하는 부식 피해는 불규칙하게

44) 김시현·정용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에 흰개미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1980년대부터 문화재 피해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국가지정 목조건축문화재의 흰개미 피해 현황 분석』, 『문화재』 Vol.55 No.2, 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103쪽.)

45) 문화재청이 배포한 표준시방에 의하면 동바리를 할 경우 상부 하중을 지탱하는 데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지장이 없어야 하며, 또 동바리 길이가 너무 짧을 경우 갈릴 수 있으며 부식부위보다 길게 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2022, 106쪽.)

46) 최근에는 이럴 경우 하부에 목재를 얇은 판재의 형태로 가공하여 기존 기둥 밑에 받쳐두는 방식으로 수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기둥 하부는 건물의 하중이 집중되는 부위로 이처럼 얇은 판재가 과연 그 하중을 감내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발생한다. 피해 부위만 제거할 경우 그 형태가 부정형으로 나타나 여기에 맞춰서 신재를 깎기가 어렵다. 그러나 하부의 일정 부위를 동일한 높이로 제거할 경우 신재를 맞춰서 가공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문화재의 가치 보존 측면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이다. 문화재의 가치를 구현하는 구제를 구조적 안정성과 작업의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희생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지 의문이 간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문화재 수리 시 전통기술을 적용했을 때 부재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까래이다.



그림 9. 직재의 서까래로 부분 교체된 사례

서까래는 대부분 누수에 의해 상부인 등이 부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부식 정도가 미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통기술에 의한 수리 방법은 대부분 신재 교체이다. 그러나 사찰 또는 민가의 경우 서까래가 곡재로 된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도 모두 신재로 교체하게 된다. 앞서서도 밝혔듯이 이때의 서까래는 문화재 특성을 잘 나타내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최대한 재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전통기술에 의존할 경우 이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신재로 교체하게 되는데 이때 교체되는 신재가 대부분 직재라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재 수리업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지만 정작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는 전통기술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자재 조달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전통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타 기술의 도입을 꺼리다 보니 곡재를 수리하여 재사용하는 기술이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곡재로 된 신재로 교체 가능하다고 하

더라도 원래의 부재를 신재로 교체하는 것이 해당 문화재의 가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옳은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 외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론할 사례가 많지만 이를 모두 나열할 수는 없으므로 몇 가지 사례들만 거론하였다. 요점은 이처럼 전통기술로 문화재 수리를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문화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즉, 기술과 대상물과의 적합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5-2. 현대기술의 활용 현황의 문제점

2021년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1980년대 이후에 발간된 보고서 250여 권을 분석하여 부위별 보수·보강 사례(47)를 모아 『목부재 재사용을 위한 보수·보강 사례』를 책으로 발간하였다. 이 사례집은 전통기술로 수리한 사례와 현대기술을 활용한 수리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1980년대 수리 사례부터 모으다 보니 그 중에는 현재 현장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도 소개하고 있다.<sup>48)</sup> 다양한 수리 기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사례집은 약간의 아쉬움을 남긴다.

문화재청에서 배포한 업무지침에 의하면 현대 과학기술은 검증된 재료와 방식으로 시행해야 하며, 또 현대 과학기술의 활용은 충분히 검증되고 증명된 것이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sup>49)</sup> 그러나 제도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배포한 사례집에 수록된 사례들이 모두 검증된 재료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실제로 해당 사례집에서 참고한 수리보고서를 찾아보면 보강 기법에 대한 검증 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문화재청의 산하기관이므로 문화재수리 현장에서는 이 사례집을 참고할 때 대부분 검증된 기술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은 기술을 다른 현장에서 똑같이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를 요한다.

건조물 문화재는 처한 환경과 조건이 모두 다르므로 보강 기술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증 작업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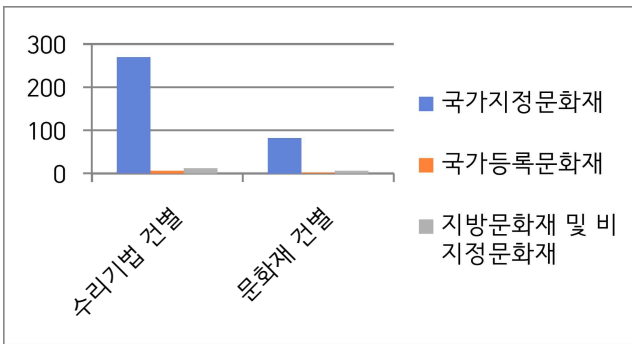
47)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목부재 재사용을 위한 보수·보강 사례』, 2021, 18쪽.

48) 부재의 외부면이 갈람 또는 부분 부후한 경우 수지 처리하는 수리기술 등은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이다.

4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2조(해체부재의 처리) 제2항, 제27조(과학기술의 활용) 참조 <시행 2022.1.1.>.

요하다.<sup>50)</sup>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구조 계산을 토대로 한 보강안을 수립하고 그중 가장 유력한 안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일본의 문화재 수리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의 문화재 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sup>51)</sup>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구조계산을 한 사례들은 있지만<sup>52)</sup> 그중 가장 유력한 안을 실험체로 제작하여 실험까지 한 사례는 없어 보인다. 이는 기술력, 예산 그리고 시간을 요하는 작업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수리 사업에 검증 작업을 위한 기간과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문화재수리 사업 중에 이러한 사례는 못 봤다.

표 1. 『목부재 재사용을 위한 보수·보강 사례』의 대상 자료 분석 통계 (단위: 건)



그리고 이 사례집을 통해서 기술의 사용 현황도 엿볼 수 있다. 사례집은 총 287건의 보강 기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중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기법이 269건, 국가등록문화재 6건, 그 외에 지방지정문화재 또는 비지정문화재가 모두 12건이다.<sup>53)</sup> 이를 문화재별로 다시 정리해 보면 총 90건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중 국가지정문화재가 82건, 국가등록문화재 2

50) 건물은 저마다 처한 환경과 구조가 다르므로 동일하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동일한 부위를 대상으로 한 수리 사례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사례집에서도 “사례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숙련된 도편수나 현장 관계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하였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앞의 책, 21쪽.)

51) 일본 나라현(奈良縣)의 도쇼다이지(唐招提寺) 금당(金堂)에 대한 수리는 12년(1998-2009년) 동안 진행하였는데 구조해석 기간이 9년에 달해 실제로 구조해석은 수리와 같이 병행한 작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奈良縣教育委員會, 『國寶 唐招提寺金堂修理工事報告書[本編1]』, 2009, 6쪽.)

52) 경복궁 근정전 수리 사례를 보면 지붕하중 감량을 위한 구조검토(문화재청, 『근정전 수리공사 및 실측조사보고서(상)』, 2003, 349쪽.)와 각종 부재들에 대한 결구 보강안(문화재청, 앞의 보고서, 408-416쪽.)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들을 제시하였고 그 중 가장 합리적인 안을 선정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검증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53) 지정문화재별 건수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사례집을 토대로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앞의 책, 194-213쪽.)

건, 그 외 지방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는 모두 6건이다. 수리보고서 수집 한계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으나 1980년대 이후 보강 기법은 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고 그 외의 문화재로는 확산 적용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지방문화재는 관리의 정도 그리고 가치의 재발견 또는 재평가 등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급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보강 기술을 좀 더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현재 문화재 수리에 있어서 현대기술 접목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목재 보강을 위한 시도들은 분명 있었지만 이에 대한 검증 작업은 부재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사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문화재는 처한 사항이 다르므로 이를 감안한 보강 방안 수립 및 실험을 거친 검증 작업이 중요하다.

### 5-3. 전통기술과 현대기술의 접목 방안 제안

건조물 문화재 수리는 결국 부재를 대상으로 한 행위로 이어진다. 이때 부재에 대한 행위는 부분 수리 또는 전체 교체가 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부재의 문화재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수리 대상 부재가 해당 문화재의 가치 형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부재에 대한 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교체를 해야 하는지,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사용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를 정한 다음에 수리 방식을 고민하여 전통기술을 사용할지, 아니면 현대기술을 사용할지, 아니면 전통기술과 현대기술을 혼용할지를 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리 방식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우선 건조물 문화재 수리는 기본적으로 전통건축물을 다루는 일이므로 전통기술과 건물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통기술이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나 문화재적 가치에 기여하는 부재라면 현대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을 제안한다.

문화재 가치 기여도가 현저히 낮고 구조적 내구성마저도 다한 부재의 경우 구조적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부재로 여길 수 있다. 이러한 부재들은 전체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는 기존 부재들을 분석하여 해당 부재의 가공법을 연구한 다음 전통기법에 의존하여 재현하는 것이 가능할 듯하다.<sup>54)</sup>

54) 김왕직은 새로 교체되는 부재는 “장식을 없애든지, 새로운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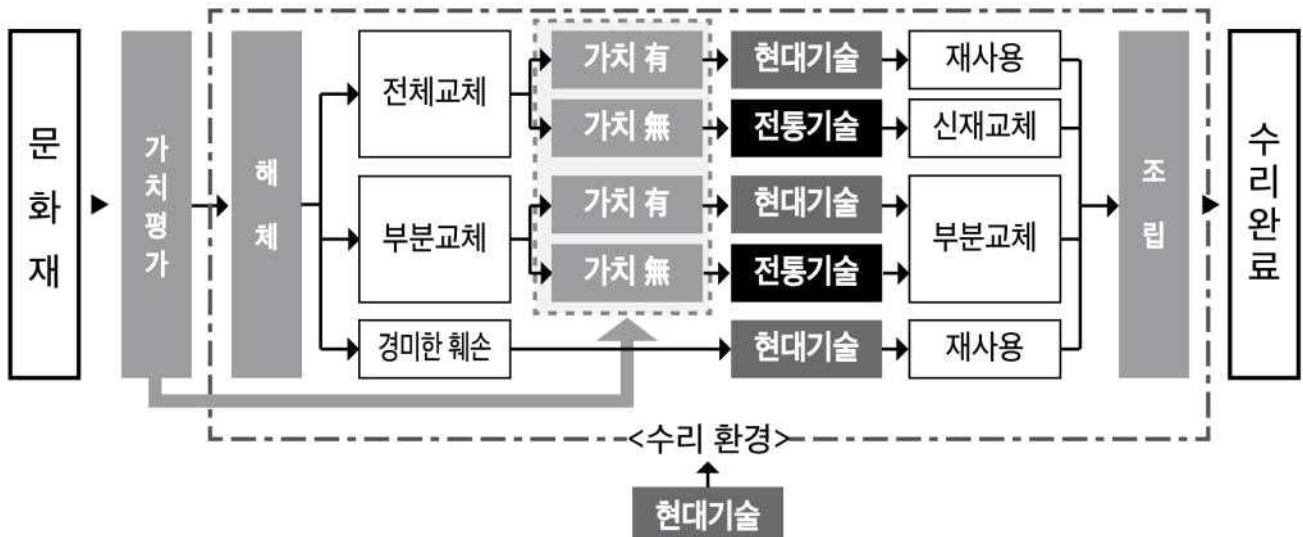


그림 10. 전통기술과 현대기술의 사용 범위 제안(안)

문화재 가치 기여도가 높고 구조적 내구성이 다한 부재는 최대한 재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재료와 현대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리 대상 부재의 구조적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동시에 보존할 수 있다.

문화재 가치 기여도가 높으면서 부분 교체를 해야 하는 부재도 최대한 재사용해야 한다. 이때에도 현대재료와 현대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재의 구조적 성능은 보장 및 보완을 한다.

문화재 가치 기여도가 낮으면서 부분 교체를 해야 하는 부재의 경우도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는 전통기술에 의거하여 부분 교체를 해서 부재를 재사용한다.

훼손의 정도가 경미한 부재의 경우에는 수리를 통해 재사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전통적인 기법으로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으므로 현대재료나 기술을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된 행위와 부재 가공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한 현대장비를 활용해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형문화재인 건조물 문화재의 가치는 수리행위나 방식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문화재 수리는 가치 보존 및 강화의 과정으로 봐야 하므로 수리행위의 모든 과정마저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것을 요

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지금까지 이어온 전통기술 중심의 문화재 수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건조물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전통기술을 활용하되 그 의존도는 낮추고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새로운 문화재 수리기술을 개발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는 1964년의 베니스 헌장을 기점으로 현대기술은 전통기술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한<sup>55)</sup> 세계적인 문화유산 보존 원칙에도 오히려 잘 부합한다. 내구성이 다한 부재라도 문화재의 가치 형성에 기여하는 부재라면 이를 어떻게든 살려서 제자리에 다시 설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현대기술과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sup>56)</sup>

## 6. 결 론

이상으로 건조물 문화재 수리와 전통기술과의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화재 수리는 ‘가치’ 중심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 문화재 수리는 단순한 기능의 회복이나 구조적 내구성 확보가 주목적이 아니라 기존의 지정 가치를 보존함은 물론이고, 기존 가치의 강화,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의 발굴을 동반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임을 나타내는 기록을 새기는 것과 같은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인용하였고 또 이렇게 새롭게 교체하는 부재에 대해서는 기존 재료와의 이질감 및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문화재 수리 기술의 현황과 개선방향』, 『2014년 03월 월례학술세미나 : 문화재 수리의 현실과 과제』, 한국건축역사학회, 2014, 31쪽.)

55) 강현, 앞의 논문, 215쪽.

56) 이러한 방식의 문화재 수리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논의된 바가 있는데 당시에는 “전통의 기능을 바탕으로 현대과학기술이 충동원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고주환, 『문화재 수리 현장의 관리와 운영』, 『2014년 03월 월례학술세미나 : 문화재 수리의 현실과 과제』, 한국건축역사학회, 2014, 66쪽.)

둘째, 전통기술은 안정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기술이다. 그러므로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노후 부재의 '교체'를 매우 당연하게 여긴다. 게다가 '전통연장'의 사용도 뒤따르는데 이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작업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문화재 수리와 전통기술의 속성과 목적은 서로 다르다. 물론 문화재는 과거의 소산이므로 전통기술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문화재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통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구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건조물 문화재 수리 시 현대 과학 기술의 도입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현대기술을 도입한 수리 방식은 연구와 실험을 거쳐 검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그동안에는 문화재 수리는 당연히 전통기술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으나 본 연구는 문화재 수리와 전통기술의 속성을 분석하여 서로 간의 적합성을 살펴본 결과 서로 간의 적합성은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제도적인 문제점과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향후에는 제도와 현장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본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강현, 「건축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전통기술 논의 고찰-송례문 복구에 있어서의 전통기술 적용 논란을 중심으로」, 『문화재』 Vol.47 No.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2. 강현, 「건축문화재의 원형 개념과 보존의 관계-한국 목조건축문화재 수리 역사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문화재』 Vol.49 No.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3. 고주환, 「문화재 수리 현장의 관리와 운영」, 『2014년 03월 월례학술세미나 : 문화재 수리의 현실과 과제』, 한국건축역사학회, 2014
4.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수리 보고서 I』, 2017
5. 권영길, 『한·중·일의 공간조영』, 서울, 도서출판 국제, 2008
6. 김시현·정용재, 「국가지정 목조건축문화재의 흰개미 피해 현황 분석」, 『문화재』 Vol.55 No.2, 국립문화재연구소, 2022

- 원, 2022
7. 김왕직, 「문화재 수리 기술의 현황과 개선방향」, 『2014년 03월 월례학술세미나 : 문화재 수리의 현실과 과제』, 한국건축역사학회, 2014
8. 김종수, 『한국 문화재 제도의 탄생-형성과 변천, 성립의 생생한 역사』, 서울, 민속원, 2020
9. 奈良縣教育委員會, 『國宝 唐招提寺金堂修理工事報告書 [本編1]』, 2009
10.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1994
11. 문화재청, 『근정전 수리공사 및 실측조사보고서(상)』, 2003
12. 문화재청,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2022
1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서울남대문수리보고서』, 1966
14. 『영건일감』
15. 윤홍로, 「전통건축의 설계 수리 보강에 대한 소고/03. 특별강연」,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2010
16.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전통건축 수리기술 사례집 01 - 목부재 재사용을 위한 보수·보강 사례』, 2021
17. Jean-Pierre Babelon·André Chastel, 『문화재의 개념』, 김예경 역, 서울, 아모르문디, 2016
18. 「강원도민일보」(www.kado.net)
19.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 『두산백과』(doopedia.co.kr)
21.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2.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
23.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24.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2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접수(2022. 06. 16)

수정(2022. 08. 29)

게재확정(2022. 09. 06)